

조기재취업수당 안내-(취업)

1.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조건(2024.1.1. 이후 수급자격 신청한 자)

1. 수급신청일 기준 14일이 지난 후,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퇴사일기준 65세이상자는 6개월이상)계속 고용된 경우
2. 취업한 대상자가 기준임금(574만원/월평균/세전)미만 소득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3. 재취업일로부터 수급종료일까지의 잔여급여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 남아 있어야 함
사례) 「90일의 경우 45일 이상」, 「120일의 경우 60일 이상」, 「150일의 경우 75일 이상」, 「180일의 경우 90일 이상」, 「210일의 경우 105일 이상」, 「240일의 경우 120일 이상」, 「270일의 경우 135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함에 유의.
4. 12개월 내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
- 수차에 걸쳐 재취업한 경우 기간단절 없이 12개월(65세이상 6개월)이상 계속 고용시 최초 입사일 기준 잔여일수 산정
사례) 2024.6.30.일 이직 → 2024. 7. 1. 재입사(O), 2024.6.30. 이직 → 2024. 7. 6 재입사(X)
- 4-1.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월10일 이상 12개월간 연속 근무한 경우
5.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재취업일과 재취업일 기준으로 2년 이내)
6. 수급자격(실업급여) 신청일 이전에 채용이 약속되었던 경우가 아닐 것
7.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동일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가 아닐 것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
-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되거나 영업을 양도·양수하였을 경우 인수·합병·분할 또는 영업을 양수한 사업의 사업주
-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학교회계직원 등이 같은 사도 소재 국공립학교에 재입사하는 경우(사업주가 사도교육감으로 동일)
8.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실업급여수급자(자영업 폐업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가 아닐 것
9. 기타사항
- 상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사외이사·비상임(근) 이사·감사 등은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취업에 비해당
- 공무원으로 채용시 조기재취업수당 비해당(다만 별정직, 임기제공무원으로 취업한 경우 제외)

2. 제출서류

- ①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②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 사업장에서 발급한 것으로 12개월(만 65세이상 6개월)이상 근로사실이 확인
- ③ 소득증빙자료 : 임금지급확인서(사업주 작성 날인), 임금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영주증 中 1
(월574만원(세전)미만 소득증빙자료 제출, 월401만원(고시금액 70%)미만 증빙 생략)

3. 청구방법

방문, 인터넷(www.ei.go.kr-개인서비스-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청구/첨부자료 스캔하여 업로드),
팩스(051-719-4505) 접수 가능
☎ 051-860-2049(1~6월생)/860-2030(7~12월생) ※전화상담 시간 : 13시~15시

4.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 잔여급여일수(재취업일~수급기간만료일) × 1/2

5. 유의사항

- ① 근무 시작일과 고용보험 취득일자는 반드시 동일해야 함.(임의가입대상자 제외)
- ② 재취업 후 12개월(만 65세이상자는 6개월) 이내 퇴사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 ③ 청구시점 : 취업일 기준 12개월(퇴사일 기준 만 65세이상 대상자는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3년 이내
- ④ 사전신청 대상 : 퇴사일 기준 만 65세이상 수급자(24.1.1. 이후 수급자격 신청) 중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취업일(사업 개시일)부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다만,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상 근로 이후 신청이 가능)
- ⑤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 실업인정 청구에 <재실업신고> 해야 함.
- ⑥ 처리기한 : 서류 접수일로부터 공휴일 제외 14일 (실제 약 3주 소요)